





	<b>규정</b>	문서번호	TWP-A613	
		제정일자	2017. 12. 18.	
	<b>WCC사업단 운영 규정</b>	개정일자		
		개정번호	페이지	3/5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업교육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부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육성사업(WCC)」에 참여하는 동원대학교(이하 ‘이 대학’)의 효율적 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육성사업(WCC)’이라 함은 특성화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선도적 발전모델 제시를 통해 직업교육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WCC사업단’이라 함은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육성사업(WCC)’을 수행하기 위한 동원대학교 산하기관(이하‘사업단’)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사업에 대한 평가·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육성사업(WCC)’(이하 ‘이 사업’이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 한다.

**제4조(사업)** 사업단은 특성화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선도적 발전모델 제시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프로그램)를 수행한다.

1. 학사제도 개선을 통한 대학 교육 인프라 구축
2. 교육혁신을 통한 융합 인재 양성
3. 서비스 러닝 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 강화
4. 유학생 유치, 해외취업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5. 그 밖에 특성화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선도모델 창출·확산

## 제2장 사업단 운영

**제5조(조직구성)** ① 사업단은 총장 직속으로 설치 운영되며, 사업단 내에는 세부사업을 실행하는 행정부서 및 학과와 사업기획·관리팀으로 구성한다.

②사업기획·관리팀은 사업의 기획·운영·관리 총괄 및 사업운영 지원을 담당 한다.

③사업단의 구성원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은 이 대학 전임교원으로 보하며, 사업수행을 위해 대학 내 각 조직과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사업 총괄책임자로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사업단장의 임기는 총 사업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단장의 교체가 필요한

	<b>규정</b>	문서번호	TWP-A613	
		제정일자	2017. 12. 18.	
	<b>WCC사업단 운영 규정</b>	개정일자		
		개정번호	페이지	4/5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WCC사업추진위원회)** ① 사업단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WCC사업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WCC사업추진위원회는 산·학·관 전문가를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③ WCC사업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자체평가위원회)** ①사업단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교내·외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③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10조(사업단 회계)** ①사업단의 수입과 지출은 이 대학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하되, 필요시 해당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사업비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입·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한다.

④회계 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의 집행)** ①WCC사업 사업비는 산학협력단이 중앙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 및 관리 할 수 없다.

②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사업단, 세부사업실행 행정부서 또는 사업비중앙관리부서가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증빙서류를 보관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후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사업비는 기관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사업비 집행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지침 또는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규정	문서번호	TWP-A613	
		제정일자	2017. 12. 18.	
	WCC사업단 운영 규정	개정일자		
		개정번호	페이지	5/5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